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가단3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담당변호사 노환준)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은 D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4. 26.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6. 14.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부동산 임의경매

F의 근저당채권자인 G, 피고의 신청에 따라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H, I(중복)]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4. 8. 4.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78,783,629원을 배당받았다.

다. D와 원고의 소송

1) D는 E, F, 원고를 상대로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8995). 위 법원은 2019. 2. 14. D의 E, F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자백간주), D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소송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5559)에서, 2020. 7. 13. ‘D가 원고에게 2021. 1. 15.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D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즉시 D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종전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의 주장(명시적 일부청구)

가. 주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종전 소송에서 E, F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종전 조정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경매절차는 무효이고, 결국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경락인인 원고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원인무효의 경매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에게 낙찰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배당받은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사정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종전 소송에서 E, F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원고는 종전 조정 당시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종전 조정에 따라 D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종전 조정내용에 의하면, D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유권도 상실되지 않는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를 상대로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417)을 제기하여, 2022. 7. 21.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 인용됨에 따라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오로지 원고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D에게 반환될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D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소송 결과는 앞서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이 위법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목 록

1. 포천시
대 860㎡
2.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층 호 19.55 ㎡
3.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층 호 20.35 ㎡
4.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층 호 17.706㎡
5.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층 호 100.42㎡



6.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호 18.81㎡

7.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호 18.26㎡

8.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호 19.5㎡

9.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호 20.35㎡

10.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호 17.785㎡

11.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호 17.315㎡

12.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호 17.305㎡

13. 1동의 건물의 표시

포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호 17.705㎡

